

공 판 기 일 연 기 신 청

사 건 2000고단 000호 00

피고인 ○ ○

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〇〇고단 〇〇〇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20〇〇. 〇. 〇.이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,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, 위 기일을 귀국일인 20〇〇. 〇. 〇. 이후로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형사○단독귀중

				S K T 로 로 발 하는 이 K K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270조	www.kldc
신 청 인	・재판장(직권) ・검사 ・피고인이나 변호인	제출부수	신청서 1부	
불복절차 및 기간	·이의(형사소송법 304조, 항고불허 : 형사소송법 403조) ·기간에 대한 명시규정 없음			